

선박보안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

박영수* · 전해동**

* 한국해양대학교

The Status Quo and Improvement of Ship Security Training

Young-Soo Park* · Hae-Dong Jeon**

*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

핵심용어 : 선박보안교육, 선원법, 지정교육기관기준, 개선방안

Key Words : Ship Security Training, Seafarers Act, Standards for the Recogniz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, Improvements

목 차

- I. 서론
- II. 선박보안교육 관련 규정
- III. 선박보안교육 현황 및 문제점
- IV. 개선방안

II. 선박보안교육 관련 규정

선원법 · 선원법 시행령 · 선원법 시행규칙

2013년 선원법(시행령, 시행규칙) 상 선박보안교육(기초, 중급, 상급)의 교육과정, 교육대상자,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에 대한 내용이 개정(신설)됨.

- 선원법 제116조(선원의 교육훈련), 동법 시행령 제43조, 동법 시행규칙 제57조, 별표2
- 그러나 지정교육기관기준 상 선박보안교육의 시설기준, 교수자격 및 인원 등에 대한 내용이 불비상태임(2017년 현재 개정작업 중)

III. 선박보안교육 현황 및 문제점

선원법상선박보안교육 대상자 ·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

교육과정	교육대상자	교육내용	교육기간	유효기간
선박보안 상급교육	「국제항해선박 및 항공시선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	선박보안계획, 선박보안 등급,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, 선박보안절정 및 평가, 선박보안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	2일	없음
선박보안 중급교육	「국제항해선박 및 항공시선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	선박보안계획, 선박보안절정,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,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	1일	없음
선박보안 기초교육	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 하려는 사람	선박보안장비,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	0.5일	없음

IV. 개선방안

1. 지정교육기관기준 고시 개정

- 지정교육기관기준(고시)상 선박보안교육의 시설기준, 교수자격 및 인원에 대한 내용 개정
- 교육기관(지정교육기관)에서 지정 변경신청(선박보안교육)

2. 기존 교육이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

- 일부 교육기관에서 해사안전관리과를 통한 보안교육기관 자격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동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이를 인정하기 위한 경과조치 필요
- 지정교육기관 고시 개정 또는 공문형태의 행정처리 필요

* First Author : youngsoo@kmou.ac.kr, 051-410-5085

† Corresponding Author : hjeon@kmou.ac.kr, 051-410-5089